

의안번호	제502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 
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발의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월 15일

#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월 15일

발의자 : 김국기, 박경숙, 김꽃임, 이양섭,  
이의영, 이종갑, 임병운

## 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」 폐지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4. 1.
- 협의 :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이 조례안은 ‘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’의 미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폐지 시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 사유서를 제출함